

의안번호	2201334
의 퇴 인	강훈식 의원
회 답 일	2024.07.25.
추 계 번호	24C1568

아동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아동권리옹호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8,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억 1,500만원(연평균 2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권리옹호관 (안 제20조)	283	283	283	283	283	1,415	283

주: 1) 2024년 7월 기준 아동권리옹호관(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권리지킴이 등 포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5명인 위촉위원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값임

2)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제도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안 제9조 (특별보호아동 지원)	(제1항)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 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4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특별보호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6. 아동정책에 관한 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기본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지역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17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항) 아동의 권리증진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권리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2.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4. 아동대표 (제4항) 위원회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8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9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 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8	안 제20조(권리구제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 예방과 개선·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둔다. (제3항) 아동권리옹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2. 시정 등 개선안 권고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요구 (제4항) 제2항에 따른 아동권리옹호관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5항)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제5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른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2. 아동의 권리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9조 (특별보호아동 지원)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안 제5조)과 특별보호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안 제9조)을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항으로 직접적 재정지출은 동 법의 다른 조항에서 발생하므로 동 조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¹⁾
2	안 제14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18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안 제19조 (아동정책영향평가)	—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지역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 조항은 현 「아동복지법」 제7조 ²⁾ ·제8조 ³⁾ ·제11조 ⁴⁾ 및 제11조의2 ⁵⁾ 와 동일하므로 제정안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은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등과 통합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를 계상하지 않음
3	안 제17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 조항은 현 「아동복지법」 제10조와 최대 위원 수(제정안 29명, 현 「아동복지법」 25명)와 당연직 위원 수(환경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추가) 등 ⁶⁾ 의 차이가 있으나, 추가된 당연직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20조(권리구제 등)	○	
5	안 제22조(비용 보조)	×	·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의 권리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외의 신규사업 실시가능성과 사업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 '24년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 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사업('24년 기준 12,000천원, 100명 기준)을 실시하고 있음

- 1) 이외에 안 제10조(생존권), 안 제11조(보호권), 안 제12조(발달권), 안 제13조(참여권), 안 제21조(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등의 조항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의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동 조항들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 2)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3) 「아동복지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아동권리옹호관(안 제20조제2항 등7))’에 대한 소요비용에 대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하기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규정함
- 본 추계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은 동 위원회 내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조사관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아동권리옹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에 ‘아동권리옹호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⁸⁾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등을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본 추계서에서는 담당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조사관을 제정안의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봄
 - － 2024년 7월 기준 전국 6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에서 ‘아동권리옹호관 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아동권리옹호관”이라 함)’을 운영 중이며, 본 추계서에서는 ‘아동권리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옹호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 2024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임위원’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므로, 신설되는 ‘아동권리옹호관’은 전원 위촉위원으로 가정하며, 위원수와 회의수당 등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최빈값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동 수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이외에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7) 안 제20조제1항의 경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함

8) 2024년 7월 기준 시·도(시·군·구 포함) 취합 자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권리옹호관” 설치·운영비이며, 2026년 2억 8,300만원 등 향후 5년(2026년~2030년)간 총 14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시·도) 2024년 7월 기준 ‘아동권리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각 지방자치단체(11개 시·도)에 5명의 위촉위원인 아동권리옹호관이 임명되고 회의 시마다 회의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2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2024년 7월 기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최빈값 5명)인 위촉위원형태의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3년 0~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수당으로 1명 1회당 9~10만원을 지급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중이지 않은 11개 시·도에 5명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옹호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회의는 반기별 1회(연간 2회)개최하되 회의수당으로 1인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⁹⁾

— ‘아동권리옹호관’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¹⁰⁾

— (연간 추가재정소요)

5명(위촉위원수)×2회(회의횟수)×10만원(회의수당)×11개 시·도 =11,000천원

○ (시·군·구) 2024년 7월 기준 ‘아동권리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136개 시·군·구)에 5명의 위촉위원인 아동권리옹호관이 임명되고 회의 시마다 회의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4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2024년 7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총 9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최빈값 5명)인 위촉위원 형태의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 중¹¹⁾이며, 2023년 0~10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수당은 1명 1회당 5~15만원

9), 10) 이외에 회의 관련 행사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함

10) 다만, 지원조직 신설이 필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11)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는 상임위원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중이나, 위촉위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이므로 본 추계서에서

을 지급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중이지 않은 136개 시·군·구에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옹호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연간 4회) 개최하되 회의수당으로 1인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¹²⁾
- ‘아동권리옹호관’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연간 추가재정소요)

$$5\text{명(위촉위원수)} \times 4\text{회(회의횟수)} \times 10\text{만원(회의수당)} \times 136\text{개 시·군·구} = 272,000\text{천원}$$

- (추가재정소요) 2024년 7월 기준 ‘아동권리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광역 11개, 기초 136개)마다 5명의 위촉위원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임명·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4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광역지방자치단체	11	11	11	11	11	55	11
기초지방자치단체	272	272	272	272	272	1,360	272
합 계	283	283	283	283	283	1,415	283

주: 1) 2024.7.기준 아동권리옹호관(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권리지킴이 등 포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5명인 위촉위원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설치·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값임

2) 개정안 시행후 실제 제도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는 위촉위원으로 가정하였음

IV. 부대의견

- 2024.7.기준 아동권리옹호관(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권리지킴이 등 포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5명인 위촉위원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신설·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값이며, 실제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